

<p>-요금현실화</p> <p>라. 요금인상의 불가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원가 55% 수준의 운임으로는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100원 인상시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에 630억원 수입증대 -2001년에 1,377억원 수입증대로 운임이 운송원가의 55%에서 59%까지 향상될 것으로 예상됨. <p>4. 질의 및 답변요지</p> <p>생 략</p> <p>5. 토론요지</p> <p>없 음</p> <p>6. 소위원회</p> <p>미 구 성</p> <p>7. 심사결과</p> <p>서울특별시(교통관리실) 조정안과 의견이 같음.</p> <p>8. 소수의견의 요지</p> <p>없 음</p> <p>9. 기타 필요한 사항</p> <p>없 음</p> <hr/>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운임범위조정에대한의견청취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598</td> <td style="width: 30%;">제출년월일 : 2000. 4. 28</td> <td style="width: 40%;">제 출 자 : 교통위원회</td> </tr> </table> <p>1. 건 명 : 지하철 운임범위 조정</p> <p>2. 제안사유</p> <p>가. 운송원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운임수준으로 인하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경영개선과 부채문제 해결을 위하여 운임범위를 조정하고자,</p> <p>나.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p> <p>3. 주요골자</p> <p>가. 기본운임 : 500원→600원 이하(20% 인상)</p> <p>나. 2구간운임 : 600원→700원 이하(16.7% 인상)</p> <p>다. 이동구간제 : 5km마다 73원→80원 이하(10% 인상)</p> <p>4.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 : 도시철도법 및 서울시물가대책</p>	의안 번호	598	제출년월일 : 2000. 4. 28	제 출 자 : 교통위원회	<p>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철도법 : 제15조의 2(운임의 신고) ①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도시철도의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철도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운임을 정하거나 변경함에 있어서 원가와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조례 : 제10조(의견청취) ①시장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지하철 운임범위 조정(안)</p> <p><input type="checkbox"/>운임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변경전 : 인가제(지하철 운영기관의 인가요청→시·도지사의 인가) ○변경후 : 신고제(시·도지사의 운임범위결정 후 지하철 운영기관이 운임을 정하여 신고) <p>※근거법령 : 도시철도법 제15조의2('99.4.15 개정)</p> <p><input type="checkbox"/>운임조정절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단계(시·도지사) : 운임범위 검토 및 협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임검토범위 → 시의회 의견청취 →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운임범위 결정) ○2단계(지하철 운영기관) : 운송기관간 사전 협의 및 신고, 조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송기관간 협의 → 운임조정신고(시장이 정한 범위내) → (시)운임신고사항 통보 (시장→재경부, 건교부장관) <p>※시·도지사가 운임범위를 정하는 것은 도시철도법에 의해 운임조정 이전에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실제 운임결정은 연락운송기관간의 협의에 따라 상한선까지 운임인상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아래로 정해질 수도 있음.</p> <p><input type="checkbox"/>운임수준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운임수준 : 수송원가의 55.1%(운임현실화율) -영업수익 541원/수송원가 982원(승객 1인당)
의안 번호	598	제출년월일 : 2000. 4. 28	제 출 자 : 교통위원회		

○ 인상필요액 : 460원(보전운임수준 960원 - 기본운임 500원)
 ※보전운임수준 960원 = [수송원가 982원-(평균수익 541원-평균운임 479원)]×기본운임 500원÷평균운임 479원

□ 운임범위 조정 필요성

- 지하철 운영기관의 부채는 '99말 기준 4조 8,150억 원이며,
- 양공사의 열악한 경영상태는 방만한 경영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4조 8,150억 원에 이르는 부채원리금 상환부담과, 수송원가의 절반 정도(55.1%)에 불과한 운임수준으로 볼 수 있음.
- 공사 재정 여건상 수송원가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운임으로 인한 공사의 경영적자가 결국 시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종국적으로 시민의 부담으로 연계됨.
- 따라서 현재 우리시 및 공사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서 어느 정도의 운임인상은 불가피함.
- 지하철운임 조정요인 분석결과 1인당 460원의 운임인상 요인이 있으나 국가의 물가안정 시책과 어려운 서민가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시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운임범위 조정 필요

□ 운임범위 조정(안)

- 운임범위조정
 - 기본운임 : 500원→600원 이하(20% 인상)
 - 2구간운임 : 600원→700원 이하(16.7% 인상)
 - 이동구간제 : 5km마다 73원→80원 이하(10% 인상)

구분	현행	조정
구역제	-1구간 : 500원 -2구간 : 600원	-1구간 : 600원 -2구간 : 700원
이동구간제	-10km까지 : 기본운임 -초과 5km마다 73원 가산	-10km까지 : 기본운임 -초과 5km마다 80원 가산

- 시민부담 최소화를 위한 조치 : 교통카드 사용 할인제도 도입
 - 일반 : 8%할인(기본운임 100원 인상시 50원 할인)
 - 학생 : 20%할인(기본운임 100원 인상시 120

원 할인)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구성현황>

1. 위원회 구성 결의
 1999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2. 위원 선임
 1999년 10월 26일 제1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
 김광수(동작 제1, 민주당)
 송미화(은평 제3, 민주당)
 김선희(비례, 민주당)
 김홍식(강북 제3, 민주당)
 서홍선(영등포 제3, 민주당)
 유대운(강북 제4, 민주당)
 윤여형(중랑 제3, 민주당)
 정현균(강서 제2, 민주당)
 최명옥(중구 제1, 민주당)
 함태호(구로 제3, 민주당)
 이정은(비례, 한나라)
 한봉수(서초 제3, 한나라)
3. 위원장·간사 선임
 1999년 11월 19일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임
 -위원장 : 김광수(동작 제1, 민주당)
 간사 : 송미화(은평 제3, 민주당)
 이정은(비례, 한나라)

<설치목적 및 주요기능>

1. 설치목적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3과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윤리규범에 관한규정을 제정 보완하고,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설치
2. 주요기능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은,
 ①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의 제정 보완
 ②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③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위원회 활동>